#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8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양부남·강유정·고민정

김승원 · 김주영 · 김현정

모경종 • 박민규 • 박수현

박정현 · 박희승 · 복기왕

서미화 · 서영석 · 송옥주

이건태 • 이광희 • 이병진

이언주 · 이용우 · 이재관

임미애 · 정성호 · 정진욱

조인철 · 최민희 · 허종식

황정아 의원(28인)

#### 제안이유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사문화시켜 수사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인해 최근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유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기관

이 스스로를 조사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이 형법에 반하는 피의사실공표의 예외규정을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왔기 때문임.

그러나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형법상 규정은 없음.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하위법령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195조제2항에서 수사를 위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 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해당 대통령령 제5조제3항은 「형사소송법」이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공표의 위법 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실체적 사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재위임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령에 수 사에 관한 준칙을 정하도록 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법」이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 등은 모 두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임.

이러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이 법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피의사실 공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조제1항제6호(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와 같은 사유를 전면 배제하는 등 기존 각 수사기관의 공보 관련 준칙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였음.

마지막으로 「형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행정규칙 제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을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피의사실공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가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였음.

### 주요내용

가.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

- 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 나. 이 법을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금지하고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안 제4조).
- 라.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범죄,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등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마.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하위 수사기관 별로 1인 이상의 전문공 보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형사사건 공개업 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형사사건의 공개는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내 촬영·녹화·중계방

송을 제한하거나 포토라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조 및 제12조).

- 아.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및 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직근 상급기관은 직무감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 공보관의 업무배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자. 수사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피의사실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정보 등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 요건 또는 공개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건관계인"이란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을 말한다.
- 2. "수사기관"이란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그 밖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 3. "수사업무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4. "피의사실등"이란 사건관계인의 성명, 인적사항, 얼굴, 사생활, 혐

의사실과 수사관련 증거서류, 증거물 등 일체의 사건관련 자료를 말한다.

- 5. "형사사건"이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법을 위반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은 그 효력이 없다.

#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

제4조(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표, 유포, 누설은 피의사실등에 관한 일체의 사건관련 자료 또는 그 내용을 말 또는 글 등으로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제8조의 전문공보관 이외의 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 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피의사실등의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관련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사건관련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못한다.

#### 제2절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제7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기 전 에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검찰청의 지청 및 경 찰서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을 고려할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서면요청이 있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경우
- 2.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 산 또는 동종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 3.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 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해당 보도 또는 취재요청의 내용에 비추어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오보의 내용에 한정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혐의사실, 수사경위, 수사상황
  -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가 본인의 성명 공개에 동의한 경우 사건관계인 또는 수

- 사업무 종사자의 성명.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문 알파벳의 순서대로 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보 및 처분일 시, 처분주문, 불기소이유 요지, 내사종결 요지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
  - 가.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성명
  -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 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
  - 라. 혐의사실, 범행수법, 수사경위, 수사상황, 증거서류 및 증거물 (다목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 나. 혐의사실, 범행수법, 수사경위, 수사상황, 증거서류, 증거물 및 지명수배 사실(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 제8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등 각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업무 담당):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2.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관할 경찰서의 형사사건 공개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②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는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공개할수 있으며, 수사업무 종사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외적 구두 공개) ① 제9조에 따른 공보자료에 의해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의 배포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없이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전문공보관의 근무지 내 지정 장소에서 하며 문답 과정에서 제2절에서 정한 공개 요건과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초상권 보호

- 제11조(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 수사업무 종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초상권 보호조치)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수사기관 내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 2. 수사기관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 제4장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

- 제13조(직무감찰) ①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 피의사실등 또는 제11 조의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정보가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 사업무 종사자의 직근 상급기관은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감 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직무감찰을 실시한다.
  - ②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각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직무감찰의 결과 제1항의 행위가 수 사업무 종사자로부터 공표, 유포, 누설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수사업무 종사자를 수사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전문공보관이 제7조에서 정한 공개 가능한 요건 또는 피의사실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그 즉시 공보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사의뢰) 제13조의 직무감찰을 통하여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 공보관의 이 법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감찰을 실시한 수사기 관의 장은 해당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 제5장 벌칙

제15조(벌칙) ①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피의사실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③ 전문공보관이 제7조에서 정한 공개 요건 또는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등의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